

시설공사입찰및계약에관한규정

(유의사항 및 계약일반조건)

제1조(입찰참가신청) 우송정보대학(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각종 시설공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이하 "응찰희망자"라 한다.)는 지정된 일시까지 다음 서류를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 신청서(소정양식) 1통
2. 해당공사의 면허증 사본 또는 자격증사본(원본제시) 1통
3. 인감신고서 1통
4. 기타 공고로서 요구한 서류

제2조(관계서류 열람) ①입찰희망자는 본 대학이 정한 시설공사 입찰 유의사항 및 계약 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도서, 계약서안 현장 설명사항, 기타 입찰과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이해하여야 되며 이 사항의 이해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 및 계약자에게 있다.

②이상의 제 서류는 등록마감일 근무시간 내에 열람할 수 있다.

제3조(현장설명) ①본 대학은 입찰등록전에 일시와 장소를 지정하여 공사의 현장설명을 실시할 수 있다.

②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술자 면허수첩 또는 신분증 및 대리인 참가시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입찰보증금) ①입찰자는 입찰전에 입찰금액(총공사 입찰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입찰보증금은 건설공제조합 보증서 또는 이행 보증보험증권에 한다.

③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 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3. 정부가 기본 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 및 그 연합회

5.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에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등의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한 법인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6.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에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 되는 자

제5조(입찰) ①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찰 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한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참가 신청서에 제출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단, 사용 인감계 제출시 사용인감으로 사용 가능함)

제6조(입찰서의 작성 등) ①입찰은 본 대학에서 배부한 소정의 입찰서에 의하여 작성 하여야 한다.

②입찰금액은 총계금액으로 기재하며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하는 인감으로 정정한 곳에 날인하여야 한다.

③입찰서는 1인 1통만을 봉합하여 제출한다.

④일단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철회, 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제7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격 또는 수입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소정의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된 입찰
3. 동일 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대리 기재하여 제출한 자
4. 입찰서중 중요한 기재사항이 불분명하거나 정정 후 날인이 없는 경우
5. 기타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배된 입찰

제8조(낙찰) ①유효한 입찰자중 본 대학에서 정하는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낙찰자가 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제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조(내역서) ①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공사금 내역서 2통을 제출하여 본 대학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본 대학에서 작성한 내역서에 명시된 내역은 공사의 견적이며 공사계약상 낙찰자가 시공할 공사의 정확한 실질적인 내역은 아니다.

③낙찰자는 1항의 내역서가 설계도서, 시설공사 입찰인 유의서 및 계약 일반조건, 특수 조건, 현장 설명사항 및 기타 제 조건에 정확히 부합되도록 본 대학에 의하여 조정 되고 수정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에 대한 제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업 발생일로부터 1년간 본 대학에 시설공사 계약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1. 입찰신청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현장설명에 불참한 자

2. 현장설명에 참가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불참 또는 고의로 기권한 자
3. 입찰시 담합하거나 타인의 참가를 방해 또는 사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기타 본 대학에 불리한 영향을 행한 자

제11조(계약보증금) ①낙찰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보증금은 건설공제조합 보증서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에 한한다.

③5,000만원 미만의 공사 및 수선에 한하여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보증금의 처리) 입찰 및 계약보증금은 입찰 및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대학에 귀속된다.

제13조(계약체결) ①낙찰자는 소정의 서식에 공사금내역서를 제출하고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계약은 소정양식의 계약서에 쌍방 서면 날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③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정의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 낙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연대보증인은 그 공사를 수행할 책임이 있고 당해공사에 해당하는 면허를 가진 자 1인 이상으로 하며 이 공사계약 이행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진다. 다만 제11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의 2배 이상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계약문서) ①계약서는 계약서, 설계도서, 입찰인 유의 및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공사금내역서 및 현장 설명조서 등으로 구성하며 상호 보완적 효력을 가진다.

②설계도서 내의 불분명, 누락, 오류, 불일치 등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즉시 사실을 지적 통지하여 본 대학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본 대학은 유효 적절한 시공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도면 및 공사지시서를 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의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된다.

④계약자는 설계도서 및 내역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공사의 사소한 변경이나 구조상 필요한 공사에 대하여는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제15조(공사의 착수) ①계약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②착공시에는 착공계의 공정표를 본 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공사재료의 검사) ①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품명, 규격 등은 필히 내역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②다만, 내역서에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것은 표준품으로써 계약목적 달성에 대해 최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③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사용 전에 전부 현장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 재료는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④계약자가 전 항에 의하여 불합격된 재료를 즉시 반출하지 아니할 때 본 대학은 임의로 이를 철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⑤공사재료중 조합 또는 시험을 요하는 물품은 현장감독자의 입회하에 그 조합 또는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⑥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이나 외부로부터 검사하기 곤란한 공작물의 시공은 현장감독자의 입회 없이는 시공할 수 없다.

⑦계약자가 전 각 항에 위배하거나 설계도서 등에 합치되지 않은 시공을 하였을 시는 본 대학은 공작물의 대체 개조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도급금액의 추가 요구를 할 수 없다.

제17조(지급재료 및 대여금 기타) ①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자재와 공사중 대여하는 기자재는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필요한 조건과 함께 이를 지급 또는 인도한다.

②지급자재 또는 다른 대여기자재의 운반비, 수선비 등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③지급자재 또는 대여기자재는 본 대학의 서면 허가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④지급한 자재와 대여기자재는 계약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자재의 잉여분은 지시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⑤공사 시공시 본 대학의 전기 및 수도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해당요금을 본 대학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현장대리인) ①계약자는 계약된 공사에 상응하는 기술면허소지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명하고 그 사실을 서면으로 본 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현장 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근하여 현장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19조(현장감독) ①감독원은 계약된 공사수행을 지휘 감독하며 공사에 사용될 재료 또는 공작물의 검사 및 시험을 행한다.

②전 항의 감독원의 직무에 대하여 계약자와 그의 고용인은 충분히 협조하여야 하며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감독원은 자기에게 부과된 권한을 남용하여 계약자의 의무와 책임을 감면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 연장부 가지불 등 계약조건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없다.

제20조(설계변경) ①본 대학은 공사의 시공중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키거나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이 사실을 지시할 수 있다.

②이로 인하여 계약기간의 변경, 계약금액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여 결정한다.

③계약금액의 증감은 내역서의 단가에 의거하여 계산하며 내역서 기재 외에 속하는 것이 있을 때는 시가를 참작하여 쌍방 협의하여 정한다.

제21조(기한연장과 지체상금) ①계약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때는

계약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계약자는 계약금액에 관련 법률이 정한 지체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와 지체책임이 본 대학에 있었을 경우는 이를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체상금은 계약자에게 지불할 공사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22조(공사의 준공) ①계약자는 계약된 공사를 완공하였을 때에는 공사자재중 지급채를 정리하여 학교에 반납하며 자기 자재, 폐물, 가설물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 반출하고 공작물 내외를 청소 정돈하여야 한다.

②계약자는 준공계를 제출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준공검사에 합격치 못하였을 시는 즉시 보수 개조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한 준공기한 연장은 지체상금의 대상이 된다.

④준공검사 완료 전에 발생한 공작물 또는 제3자의 손해는 계약자의 부담이 된다.

제23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자는 관련 법률이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사금 수령일까지 현금 또는 건설공제조합 보증서 및 보험계약 증서로써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②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 보증금이 필요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하자보수 기간중 계약자가 하자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 또는 제출받은 보증서의 금액은 본 대학에 귀속된다.

④하자가 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일 때에는 하자기간 종료 후라도 본 대학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거나 실액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24조(특허권사용) 계약자는 공사의 시공이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25조(발굴물의 처리) 계약자 또는 그 고용인은 공사장에서 발굴된 모든 가치있는 물건은 파손됨이 없도록 하여 즉시 본 대학에 통보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6조(대금지급) 공사가 준공된 후의 공사비 지급은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27조(하도급의 금지) ①계약자는 계약된 공사를 일괄하여 타인에게 하도급 시킬 수 없다.

②학교의 승인을 얻어 유자격자에게 부분 하도급을 시킬 수 있으나 계약에 의한 계약자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28조(기성공작물 및 타의 설비) ①본 대학은 공작물의 인수 전에도 기성공작물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②계약자나 부가계약자는 본 대학의 지시에 따라 상호협력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29조(종업원 및 고용원) ①계약자가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사용하는 기술자 및 고용원은 당해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라야 한다.

②계약자는 대리인, 종업원들이 본 대학에 대한 일체의 손해 및 불미스러운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며 본 대학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들의 일체 문제에 책임이 있다.

제30조(계약불이행) 계약자가 다음 각 호의 해당되어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본 대학은 일방적으로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1. 착공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착공치 않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준공기간내 준공치 못할 때
3. 공사가 공정대로 진보되지 않거나 공사를 소홀히 하여 준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계약자 또는 대리인 및 종업원이 본 대학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본 대학 직원의 직무를 방해하였을 때
5. 기타 계약자가 계약조건을 위배하였을 때

제31조(어구해석과 분쟁) ①입찰유의 및 계약일반조건 기타 계약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본 대학과 계약자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 대학의 해석에 따른다.

②계약에 따라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계약상 발생하는 문제분규는 본 대학 결정에 따른다.

제32조(준용) ①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과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